

2019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관 세 법

총평 및 해설 : 아모리이그잼학원 이명호 관세사

■ 총평

법령집을 중심으로 꼼꼼하게 공부한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관세법의 이해와 암기가 '일정 수준'에 이르지 못한 학생들은 대부분의 문제를 푸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문장의 일부분을 살짝 바꿔 놓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주로 바뀌는지를 훈련하지 않고 시험에 임했다면 문제를 푸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관세법 시험이 '매우 어려웠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변별력은 큰 시험이었습니다. 이번 시험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관세법은 총 1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험 문제는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에서 5문항이 출제되어 역시 '과세'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는 관세법 시험의 특징이 잘 나타난 시험이었습니다.
- (2) 3번 문제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에 개정된 규정이 시험의 핵심으로 다뤄졌습니다. 개정 후 8개월 만에 시험에 출제된 것입니다. 개정 사항도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 (3) 어떤 '대상'이나 '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묻는 문제보다는 문장의 일부 표현을 바꾸는 '문구 변형', '숫자 변형' 문제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문장을 꼼꼼하게 익혀야 하겠습니다.

■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었나?

번호	범위	내용	특징
1	제1장 총칙	기간과 기한	'다음 날'을 넣거나 뺀 문구 변형 문제
2	제1장 총칙	신고서류 보관기간	'2년'을 '3년'으로 바꾸는 숫자 변형 문제
3	제9장 통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 업체	'지체 없이'를 '10일 이내'로 바꾼 문구 변형(또는 숫자 변형) 문제
4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	보복관세, 편익관세	보복관세 부과 사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
5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외'를 '포함'으로 바꾼 문구 변형 문제
6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	관세환급금의 환급	'다음 날'을 뺀 문구 변형 문제
7	제6장 운송수단	입출항 절차 등	'최종'을 '최초'로 바꾼 문구 변형 문제
8	제7장 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세관장'을 '관세청장'으로 바꾼 문구 변형 문제
9	제7장 보세구역	해체·절단 등 작업 허가	'10일 이내'를 '지체 없이'로 바꾼 문구 변형(또는 숫자 변형) 문제
10	제9장 통관	무역원활화위원회	'20명'을 '25명'으로 바꾼 숫자 변형 문제.

			'기획재부장관'을 '기획재정부차관'으로, '기획재정부차관'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바꾼 바꾼 문구 변형 문제.
11	제12장 조사와 처분	수색, 압수, 서류송달, 출석 요구 등	'6개월'을 '3개월'로 바꾼 숫자 변형 문제. 관세법에 관한 서류 송달과 영장 발급에 관한 정확한 이해를 묻는 문제.
12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	납세의무자	'제외'되는 것을 포함되는 것으로 바꾼 문구 변형 문제
13	제5장 심사와 심판	심사청구 기간 등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을 '처분을 한 날'로, '통지를 받은 날'을 '통지를 한 날'로 바꾼 문구 변형 문제
14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및 제척기간의 기산일	'분실된 날의 다음 날'을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 날'로 바꾼 문구 변형 문제. '1년'을 '5년'으로 바꾼 숫자 변형 문제.
15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	과세물건 확정 시기	과세 대상과 비과세 대상을 구분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
16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	상계관세,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여러 탄력관세의 '잠정조치'를 구분하여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
17	제9장 통관	물품의 검사	'확인'을 '인정'으로 바꾼 문구 변형 문제
18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관세 감면	'관세 감면'을 '관세 면제'로 바꾼 문구 변형 문제
19	제5장 심사와 심판	과세전적부심사	'할 수 있다'를 '할 수 없다'로 바꾼 문구 변형 문제
20	종합	잠정가격신고, 위약환급, 즉시반출, 체납처분면탈죄	'세관장'을 '관세청장'으로, '반입하여 수출'을 '반입'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반출하지 않은 경우'로 바꾼 문구 변형 문제

■ 해설

문 1. 관세법령상 총칙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기한이 공휴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 ②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한 내국세등의 체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심판청구가 계류 중인 경우에도 세무서장이 그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
- ③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관세법」에 따른 기한까지 신고 및 신청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을 기한으로 한다.
- ④ 세관장은 천재지변으로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④ 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관세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p>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법 제10조). 법 제10조 전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천재지변'으로 줄이고, '관세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의 앞 부분을 생략하고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로만 표현하여 출제하였다.</p> <p>① 관세법에 따른 기한이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과 토요일을 포함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법 제8조 제3항). 즉 '그 다음 날의 다음 날'이 아니라 단순히 '다음 날'이라고 해야 한다. '다음 날의 다음 날'이라는 말은 관세법에서 오직 보정신청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의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에서만 쓰는 표현이다.</p> <p>② 관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체납된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등"이라 하되, 내국세등의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을 포함한다)를 징수하기 위하여는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경우 및 압류 등 체납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체납처분을 유예받은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할 수 없다(영 제1조의2).</p> <p>1. 체납자의 체납액 중 관세의 체납은 없고 내국세등만이 체납되었을 것 3. 체납된 내국세등의 합계가 1천만원을 초과했을 것</p> <p>즉,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한 내국세등의 체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심판청구가 계류 중인 경우 세무서장이 그 체납세액을 '징수하게 할 수 없다.'</p> <p>③ 관세법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전산처리설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관세법에 따른 기한까지 관세법에 따른 신고, 신청, 승인, 허가, 수리, 교부, 통지, 통고, 납부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법 제8조 제4항). 즉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이 아니라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이라고 해야 한다.</p>
--	---

문 2. 「관세법시행령」상 신고서류의 보관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세화물반출입에 관한 자료는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수출거래반송거래 관련 계약서는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③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는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④ 수입거래관련 계약서는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해설	<p>① 보세화물반출입에 관한 자료는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2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p> <p>관세법에 따라 가격신고, 납세신고, 수출입신고, 반송신고, 보세화물반출입신고,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적하목록을 제출한 자는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신고필증을 포함한다)를 신고 또는 제출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법 제12조). 관세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영 제3조 제1항).</p>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 가. 수입신고필증</p>

	<p>나. 수입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p> <p>다. 제237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거래에 관련된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p> <p>라.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p> <p>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p> <p>가. 수출신고필증</p> <p>나. 반송신고필증</p> <p>다. 수출물품·반송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p> <p>라. 수출거래·반송거래 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p> <p>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당해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2년</p> <p>가. 보세화물반출입에 관한 자료</p> <p>나. 적하목록에 관한 자료</p> <p>다.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p>
--	---

문 3. 관세법령상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 ②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가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공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 ④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의 합병이 그 업체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합병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해설	<p>④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가 양도, 양수,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유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법 제 255조의2 제10항). 이 규정은 2018년 12월 31일에 신설된 것으로, 신설 이후 처음 출제되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가 ‘합병’을 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유가 업체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에서 ‘10일 이내에 이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은 ‘지체 없이 이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바뀌어야 한다.</p> <p>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법 제255조의2 제3항).</p> <p>②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가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법 제255조의2 제5항).</p> <p>③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공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법 제255조의2 제8항).</p>

문 4. 「관세법」상 보복관세와 편익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특정 물품에 대하여 무역에 관한 국제협정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상당액의 범위에서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 ② 보복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국가, 물품, 수량, 세율, 적용시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보복관세를 부과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국제기구 또는 당사국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편익관세의 적용으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국가, 물품 및 기간을 지정하여 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p>①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물품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상당액의 범위에서 관세(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법 제63조 제1항).</p> <p>1. 관세 또는 무역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양자 간의 협정 등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경우</p> <p>2. 그 밖에 우리나라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하는 경우</p> <p>즉,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물품 등에 대하여 ‘관세 또는 무역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양자 간의 협정 등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자체가 보복관세 대상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의 ①에서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특정 물품’이라는 표현도 어색하기는 하지만, 무엇 보다도 보복관세 부과 사유 자체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었다.</p> <p>② 보복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국가, 물품, 수량, 세율, 적용시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 제63조 제2항).</p> <p>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보복관세를 부과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국제기구 또는 당사국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법 제64조).</p> <p>④ 기획재정부장관은 편익관세의 적용으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국가, 물품 및 기간을 지정하여 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법 제75조).</p>

문 5. 관세법령상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사전심사를 심의하는 경우 심사 결과의 통지 기간은 그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을 포함하여 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다.
- ②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지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관세청장이 심사하여 통지한 사전심사 결과의 유효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④ 세관장은 수출입신고가 된 물품이 사전심사 및 재심사하여 통지한 물품과 같을 때에는 그 통지 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해설	<p>④ 세관장은 수출입신고가 된 물품이 사전심사 및 재심사하여 통지한 물품과 같을 때에는 그 통지 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법 제86조 제5항 전단).</p> <p>①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대</p>

	<p>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86조 제2항). 여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영 제106조 제4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사전심사를 심의하는 경우 해당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 2. 제2항에 따른 보정기간 3. 해당 물품에 대한 구성재료의 물리적·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분석에 소요되는 기간 4. 관세협력이사회에 질의하는 경우 해당 질의에 소요되는 기간 <p>즉, ①에서 심사 결과의 통지 기간이 30일 이내라는 것은 맞지만,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표현한 부분이 잘못되었다. 영 제106조 제4항 제1호의 기간(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사전심사를 심의하는 경우 해당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30일’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지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법 제86조 제3항). ③ 관세청장이 심사하여 통지한 사전심사 결과의 유효기간은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법 제86조 제7항).
--	---

문 6. 「관세법」상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금·가산세의 과오납금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 ② 납세의무자의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 ③ 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의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 ④ 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의 과다환급액을 징수할 때에는 과다환급을 한 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다환급액에 더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해설	④ 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의 과다환급액을 징수할 때에는 ‘과다환급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다환급액에 더하여야 한다(법 제47조 제2항).

문 7. 「관세법」상 운송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개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기준 등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시설 등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 ② 외국무역선이 개항에 입항할 때에는 선박국적증서와 최초 출발항의 출항면장(出港免狀)이나

이를 갈음할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③ 재해로 내항선이 외국에 기착하고 우리나라로 되돌아왔을 때에는 선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적재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통관장에서 외국물품을 차량에 하역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②
해설	<p>②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불개항 출입허가를 받은 지역을 포함한다)에 입항하였을 때에는 선장이나 기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과 적하목록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입항보고를 하여야 하며, 외국무역선은 선박국적증서와 '최종' 출발항의 출항면장(出港免狀)이나 이를 갈음할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이나 승무원 휴대품목록의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법 제135조 제1항).</p> <p>① 개항의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항의 운영자는 개항이 이 시설기준 등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시설 등을 신속하게 개선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 등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법 제133조 제2항 및 제3항).</p> <p>③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내항선이나 내항기가 외국에 기착(寄着)하고 우리나라로 되돌아왔을 때에는 선장이나 기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적재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139조).</p> <p>④ 통관역이나 통관장에서 외국물품을 차량에 하역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151조 제1항).</p>

문 8. 「관세법시행령」상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은 30일 이상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을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지사유 및 휴지기간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관세청장은 연 2회 이상 보세화물의 반출입량·판매량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세판매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관세청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세판매장 별 매출액 보고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말일까지 전국 보세판매장의 매장별 매출액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법인인 경우에 그 본점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요지를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해설	<p>③ 관세청장은 법 제176조의2제7항(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세판매장 별 매출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말일까지 전국 보세판매장의 매장별 매출액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영 제192조</p>

	<p>의7).</p> <p>①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은 30일 이상 계속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을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을 다시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영 제193조의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해 특허보세구역의 종류·명칭 및 소재지 2. 휴지사유 및 휴지기간 <p>② '세관장'은 연 2회 이상 보세화물의 반출입량·판매량·외국반출현황·재고량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세판매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영 제213조 제4항).</p> <p>④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법인인 경우에 그 등기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요지를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영 제190조 제2항).</p>
--	---

문 9. 「관세법」상 보세구역의 통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세청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세사 전형에 응시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전형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전형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②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한 해체·절단 작업의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 등을 위하여 견본품으로 채취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물품이 사용·소비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된 것으로 본다.
- ④ 보세구역에 출입하는 자는 물품 및 보세구역감시에 관한 세관장의 명령을 준수하고 세관공무원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정답	②
해설	②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한 해체·절단 작업의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159조 제3항).

문 10. 「관세법시행령」상 무역원활화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무역원활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된다.
- ② 무역원활화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차관이 지명한다.
- ③ 무역원활화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지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로 알릴 수 있다.
- ④ 기획재정부차관은 무역원활화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신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p>③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로 알릴 수 있다(영 제245조의3 제3항).</p> <p>① 무역원활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영 제245조의2 제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차관'이 된다(영 제245조의2 제3항).</p>

	<p>② 무역원활화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한다(영 제245조의2 제6항).</p> <p>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원활화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신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영 제245조의2 제5항).</p>
--	---

문 11. 「관세법」상 조사와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현행범이 아닌 경우 해진 후부터 해 뜨기 전까지는 수색을 할 수 없지만, 이미 시작한 수색은 해가진 이후에도 계속할 수 있다.
- ② 세관장은 물품을 압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물품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 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③ 관세법에 관한 서류는 인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인편 송달이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 ④ 세관공무원이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하여 출석요구서를 발급할 때에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아야 한다.

정답	①
해설	<p>① 해진 후부터 해 뜨기 전까지는 검증·수색 또는 압수를 할 수 없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306조 제1항). 이미 시작한 검증·수색 또는 압수는 법 제30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속할 수 있다(법 제306조 제2항).</p> <p>② 세관장은 법 제269조, 제2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72조부터 제27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어 압수된 물품에 대하여 그 압수일부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물품의 소유자 및 범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유실물로 간주하여 유실물 공고를 하여야 한다(법 제299조 제1항).</p> <p>③ 관세법에 관한 서류는 인편이나 등기우편으로 송달한다(법 제288조). 인편으로 송달하는 것이 곤란할 때 우편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인편과 등기우편이 동일 수준의 송달 방법이다. 우편도 '등기우편'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해야 한다.</p> <p>④ 관세법에 따라 수색·압수를 할 때에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아야 한다(법 제296조 제1항).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발급하면 된다(법 제294조 제3항).</p>

문 12. 「관세법」상 관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인이 합병하거나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하여 관세·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의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 ② 법령, 조약, 협약 등에 따라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는 보증액의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진다.
- ③ 수입신고인이 수입신고를 하면서 화주가 아닌 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한 경우 그 신고인이 관세포탈을 범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그 신고인은 관세포탈로 얻은 이익이 없더라도 납세의무자가 된다.
- ④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는 물품(「관세법」 제239조에 따라 소비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소비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정답	③
해설	③ 관세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물품(특별납세의무가 적용되는 물품)에 관계되는 관세·가

	<p>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법 제19조 제5항).</p> <p>1.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입신고물품의 경우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자가. 수입신고물품이 공유물이거나 공동사업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인 납세의무자</p> <p>나. 수입신고인이 수입신고를 하면서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가 아닌 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한 경우: 수입신고인 또는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가 제270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관세포탈 또는 부정감면의 범죄를 범하거나 제271조제1항(제270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른 범죄를 범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수입신고인 및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와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다만, 관세포탈 또는 부정감면으로 얻은 이득이 없는 수입신고인 또는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는 제외한다.</p> <p>2. 제1항제2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 2인 이상의 납세의무자</p>
--	---

문 13. 관세법령상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을 한 날(처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한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② 심판청구인은 청구의 대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③ 심사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하는 사유를 심사청구서에 적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 ④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내국세등의 부과, 징수, 감면, 환급 등에 관한 세관장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법 제121조 제1항).

문 14. 관세법령상 관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그 기산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관세의 경우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다.
- ㄴ.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산정할 때 분실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 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 ㄷ.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에 따라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ㄹ.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산정할 때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ㄱ, ㄴ, ㄹ
- ④ ㄴ, ㄷ, ㄹ

정답	②
해설	<p>ㄴ.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산정할 때 분실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분실된 날’의 다음 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영 제6조 제1호). 이 규정은 아래의 영 제6조 제1호에 해당한다.</p> <p>법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산정할 때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영 제6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6조제1호 내지 제1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 2.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3.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날 중 먼저 도래한 날의 다음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제2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완료보고를 한 날 나. 법 제176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기간(특허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말한다)이 만료되는 날 4. 과다환급 또는 부정환급 등의 사유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환급한 날의 다음날 5. 법 제28조에 따라 잠정가격을 신고한 후 확정된 가격을 신고한 경우에는 확정된 가격을 신고한 날의 다음 날(다만,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만료일의 다음날) <p>ㄷ.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에 따라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법 제21조 제2항).</p>

문 15. 「관세법」상 과세물건 확정 시 등 관세의 부과·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으로서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된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 ②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보세운송하는 외국물품이 지정된 기간 내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아니하여 즉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운송을 신고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 ③ 여행자가 관세통로에서 사용한 휴대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을 사용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 ④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인 선용품이 하역 허가의 내용대로 하역되지 아니하여 즉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물품에 대하여는 도착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정답	②
해설	<p>② 보세운송하는 외국물품이 지정된 기간 내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아니하여 즉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법 제16조 제5호). 이 문제의 경우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하였으므로, 이 때의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보세운송을 신고한 때'라고 해도 충분하다.</p> <p>① 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되었을 때에는 그 운영인이나 보관인으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때와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법 제160조 제2항). 법 제160조 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법 제16조 제3호). 즉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관세 징수의 예외이므로 과세물건 확정시기 자체가 없다.</p> <p>③ '여행자가 관세통로에서 사용한 휴대품'은 법 제239조의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에 포함되므로 비과세 대상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 과세물건 확정시기 자체가 없다.</p> <p>④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인 선용품이 하역 허가의 내용대로 하역되지 아니하여 즉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물품에 대하여는 '하역을 허가받은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법 제16조 제1호).</p>

문 16. 관세법령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세관장은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이 있다고 추정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도 추계된 덤핑차액을 잠정덤핑방지관세로 부과할 수 있다.
- ③ 교역상대국이 차별적인 조치를 하여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에 실질적 피해등이 있다고 추정되는 증거가 있는 경우 보복관세 부과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피해상당액의 범위에서 잠정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 ④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입수량제한등의 조치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관세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의 부과를 중단한다.

정답	④
해설	<p>④ 긴급관세의 부과 또는 수입수량제한등의 조치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잠정긴급관세의 부과를 중단한다(법 제66조 제2항).</p> <p>① 세관장은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상계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법 제57조).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조치'는 법 제59조(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에 따른 잠정조치 중의 하나이다.</p> <p>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 및 기간을 정하여 잠정적으로 추계(推計)된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도록 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조치(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법 제53조 제1항). 즉, '잠정조치'는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2. 제54조에 따른 약속을 위반하거나 약속의 이행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제출자료의 검증 허용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용할 수 있는 최선의 정보가 있는 경우 <p>③ 보복관세에는 잠정조치가 없다. 즉 '잠정보복관세'라는 용어가 없다.</p>

문 17. 「관세법」상 물품의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관공무원은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 ② 관세청장은 검사의 효율을 거두기 위하여 검사대상, 검사범위, 검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③ 관세청장은 불량 물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물품의 정보를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 ④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정보교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를 둔다.

정답	③
해설	<p>③ 관세청장은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불량·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물품의 정보를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법 제246조의3). 즉, 불량물품으로 '확인'되어야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정도로는 해당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p>

문 18. 관세법령상 관세의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률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하는 경우 면제되는 관세의 범위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상계관세의 세율은 면제되는 관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②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한 연구기관이 연구·개발 대상물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할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 ③ 정부와 체결한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용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 ④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 영해에서 포획한 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우리나라 선박에서 제조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p>②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학술연구용·교육용·훈련용·실험실습용 및 과학기술연구용으로 사용할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법 제90조 제1항, 규칙 제37조 제2항 제22호). 이때 적용될 수 있는 감면 규정은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인데, 이 감면에 따라 관세가 일부 경감되기는 하지만 ‘면제’되지는 않는다.</p> <p>① 관세법 기타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하는 경우 면제되는 관세의 범위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법 제50조제2항제1호의 세율(상계관세 포함)은 면제되는 관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영 제111조 제2항).</p> <p>③ 정부와 체결한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용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법 제88조 제1항,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p> <p>④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 영해에서 포획한 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우리나라 선박에서 제조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법 제93조, 특정물품의 면세 등).</p>

문 19. 관세법령상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난 후 그 청구가 제기된 경우에는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 ② 동일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관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의 전부를 채택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고 일부를 채택하는 결정이나 재조사 결정은 할 수 없다.
- ④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적법하지 아니한 청구를 하는 경우 그 청구에 대하여는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다.

정답	③
해설	<p>③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법 제118조 제4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택하는 결정. 이 경우 구체적인 채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한 세관장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3.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적법하지 아니한 청구를 하는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문 20. 관세법령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납세의무자는 2년의 범위안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확정가격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외국으로부터 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수리 당시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물품이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되면 관세를 환급한다.
- ③ 즉시반출신고를 한 자가 신고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출하지 않은 경우 관세를 부과하고, 그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가산세를 징수한다.
- ④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④
해설	<p>④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 또는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275조의2 제1항, 체납처분면탈죄).</p> <p>①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자는 2년의 범위안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여야 한다(영 제16조 제3항).</p> <p>②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부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관세를 환급한다(법 제106조 제1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보세구역(법 제156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에 이를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였을 것'. 이 경우 수출은 수입신고 수리일부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할 수 있다. 2.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 보세공장에 이를 다시 반입하였을 것 <p>③ 즉시반출신고를 한 자가 신고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세를 부과하고, 그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가산세를 징수한다(법 제253조 제4항).</p>